

입법예고 종법령명	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		
담 당	포교원 포교부 포교팀 (02-2011-1895)	입법예고일	2025년 2월10일 ~ 3월 1일

1. 이유 및 취지

○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중앙중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(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 개정).

3.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종류 및 상격) 포교대상의 종류와 상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 상 : 종정 표창 공로상 : 총무원장 표창 원력상 : 포교원장 표창 <p>[제목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]</p>	<p>제2조(종류 및 상격) 포교대상의 종류와 상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 상 : 종정 표창 공로상 : 총무원장 표창 원력상 : 총무원장 표창 <p>[제목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]</p>
<p>제3조(추천자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구본사주지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대표자 종단소속 포교단체의 대표자 <p>② 위 1항 이외의 자가 추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포교원 포교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[제목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]</p>	<p>제3조(추천자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구본사주지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대표자 종단소속 포교단체의 대표자 <p>② 위 1항 이외의 자가 추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포교원 포교부장과 협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.</p> <p>[제목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]</p>
<p>제6조(공고 및 추천절차) ① 포교원장은 포교대상 시상일 60일 이전에 포교대상 시행공고를 종단 기관지에 게재하여야 하며, 공고내용을 교구본사 및 종단등록 신도단체, 종단소속 포교</p>	<p>제6조(공고 및 추천절차) ① 총무원장은 포교대상 시상일 60일 이전에 포교대상 시행공고를 종단 기관지에 게재하여야 하며, 공고내용을 교구본사 및 종단등록 신도단체, 종단소속 포교</p>

현행	개정안
<p>단체, 전국 사찰에 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3조의 추천자가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포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추천서 2. 포교활동 공적서 3. 후보자 이력서 	<p>단체, 전국 사찰에 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3조의 추천자가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고된 기한 내에 포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추천서 2. 포교활동 공적서 3. 후보자 이력서
<p>제7조(심사) 포교대상 후보자 선정에 따른 심사는 다음의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교대상 담당자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종단신도등록 및 경력사항 등 공적조사를 실시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한다. 2.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. 3.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는 시상일 20일 전에 한다. 4. 대상(종정상) 후보자의 경우 제 2호에도 불구하고,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포교원장의 추천으로 포상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 	<p>제7조(심사) 포교대상 후보자 선정에 따른 심사는 다음의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교대상 담당자는 접수된 후보자에 대한 종단신도등록 및 경력사항 등 공적조사를 실시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한다. 2.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를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. 3.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는 시상일 20일 전에 한다. 4. 대상(종정상) 후보자의 경우 제 2호에도 불구하고,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포교부장의 추천으로 포상법에 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.
<p>제8조(심사위원회) ① 심사위원회는 포교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9인 이내로 하며,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포교원장 2. 총무원 총무부장 3. 교육원 교육부장 4. 포교원 포교부장 5.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6. 중앙신도회장 7. 포교원장이 위촉한 3인 <p>② 위 ①항 7호에 의거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이 궐위시 포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></p> <p>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</p>	<p>제8조(심사위원회) ① 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9인 이내로 하며,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무원장 2. 총무부장 3. 포교부장 4. 교육부장 5.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6. 중앙신도회장 7. 총무원장이 위촉한 3인 <p>② 위 ①항 7호에 의거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이 궐위시 포교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불기 2563(2019).09.04></p> <p>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</p>

현행	개정안
<p>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</p>	<p>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</p>
	<p><u>부칙 <불기 2569(2025).00.00 개정></u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p>